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78 발의연월일: 2025. 2. 24.

발 의 자:조경태・이헌승・고동진

서명옥 • 김예지 • 서천호

김소희 • 안철수 • 박성훈

김용태 · 조정훈 · 곽규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(部類)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,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판매 위탁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내 최대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지정된 5개의 도매시장법인과 관련,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수수료로 벌어들인 평균 매출액이 1,551억원에 달하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23.1%인 것으로 나타나, 평균 영업이익률 4%대인 대기업 유통사와 비교하였을때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채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

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(公募)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, 위탁 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 확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3조, 제32조, 제42조 및 제82조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23조의 제목 중 "지정"을 "지정 및 재지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부류별로"를 "공모(公募) 방식에 따라 부류별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6항) 중 "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"을 "공모기준, 지정·재지정의 방법과 절차 및 그밖에 공모와 지정·재지정"으로 한다.

-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도매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6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되,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재지정하여야 한다.
-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우 농산물의 가격안정,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

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자격, 법인별 채용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제1항제3호 중 "위탁수수료"를 "위탁수수료(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도축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포함하지아니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5호까지의 규정"을 "제5호까지(제3호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-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- 1. 양곡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
- 2. 청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(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)
- 3. 수산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
- 4. 축산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

- 5. 화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
- 6. 약용작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

제82조제3항 중 "취소할 수 있다"를 "취소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까지의 규정"을 "제6항까지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신규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신규로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이 농립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도매시장법인의 <u>지정</u>) ①	제23조(도매시장법인의 <u>지정 및</u>
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	<u> 재지정</u>) ①
자가 <u>부류별로</u> 지정하되, 중앙	<u>공모(公</u>
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	募) 방식에 따라 부류별로
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	
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	
의하여 지정한다. 이 경우 5년	
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	
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
	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
	계속하여 도매 업무를 하려는
	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
	9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
	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3년 이
	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
	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6항에

<신 설>

⑥ 도매시장법인의 <u>지정절차와</u> <u>그 밖에 지정</u>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매매방법) (생략)

<u><신 설></u>

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되, 중 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 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재지정하여야 한다.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법 인을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경 우 농산물의 가격안정, 농업인 의 권익보호 및 농수산물 도매 유통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-----.

제32조(매매방법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- ②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자격, 법인별 채용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

제42조(수수료 등의 정수제한) ① 제도매시장 개설자, 도매시장법인, 시장도매인, 중도매인 또는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2. (생략)
- 3.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 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 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 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

4.·5. (생략) <u><신설></u>

성 또는 해양구산구성으로 성
한다.
42조(수수료 등의 징수제한) ①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
위탁수수료(도매시장
또는 공판장에 도축장이 설치
되어 있는 경우 「축산물 위
생관리법」에 따라 징수하는
수수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
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포함하
<u>지 아니한다)</u>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
수료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

<u>②</u>	제1호	항제1	호부	-터	<u>제5</u>	호까	-ス]
의	규정(에 [[구른	사용	구료	및	수
수호	료의 .	요율-	<u> </u>	중림=	축산	식품	부
령	또는	해약	냥수	산부	령으	.로	정
한다	7.						

- 제82조(허가 취소 등) ① · ② 7 (생 략)
 -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

구분에 따른다.
1. 양곡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
의 20
2. 청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
의 70(서울특별시 소재 중앙
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
<u>40)</u>
3. 수산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
의 60
4. 축산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
의 20.
5. 화훼부류: 거래금액의 1천분
의 70
6. 약용작물부류: 거래금액의 1
천분의 50
<u>③</u> 제5호까지
(제3호는 제외한다의 <u>)</u>
제82조(허가 취소 등) ① · ②
(현행과 같음)
③

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 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 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는 도매시장 공판장의 승인을 <u>취소할 수 있</u> 다.

<신 설>

④ • ⑤ (생 략)

⑥ 제1항부터 <u>제5항까지의 규</u> 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 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렁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.

⑦ 도매시장 개설자가 <u>제5항</u>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

<u>취소하여야 한</u>
<u>다</u> .
④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
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도매시
장 개설자는 제23조제1항에 따
라 도매시장법인을 신규로 지
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매시
장 개설자는 신규로 지정하려
는 도매시장법인이 농림축산식
품부령 또는 해양수산식품부령
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적합
한지를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
결정하여야 한다.
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과 같음)
<u>⑦</u> <u>제6항까지</u>
 <u>⑧</u> <u>제6항</u>

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	
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	
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	
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	
다.	.